

2025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시행 공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하여 2025년도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서귀포시장

1.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급 제외 대상

1. 지원대상

-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2. 신청 자격 및 요건, 제외대상

신청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일 것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 등록은 직불금 신청일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일(9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지하여야 인정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일 것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다만,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1]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1호가목의 3), 6) 및 7)에 따른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 어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어가(이하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을 것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조의2(소규모어가의 범위)

「수산직불제법」 제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어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를 말한다.

1. 어가의 구성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업인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는 배우자

나.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다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으로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이 경우 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2.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일 것

○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별표 1]

○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급을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별표 1]

○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천만원)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천5백만원) 미만일 것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별표 1]

■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할 것

2.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

3.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급을 신청한 날을 포함하여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4.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②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람이 속한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1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지급요건은 별표 1과 같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1]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제11조의2 관련)

1.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어업인의 어업형태나 어업 경영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인일 것

- 1)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2)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다만, 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의 경우에는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한정한다.

3)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른 어업 신고를 한 어업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 가)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 면허
- 나)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 허가
- 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 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5)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양식업은 제외한다)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6)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7)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를 한 어업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 면허
- 나)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 허가

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종자의 연간 판매액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9) 그 밖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업인
나. 가목에 따른 어업인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1)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이 5톤 미만일 것
- 2)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어업 종사기간 및 어촌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1) 어업 종사기간: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할 것
- 2) 어촌 거주기간[가목3), 6) 및 7)에 따른 어업인만 해당한다]: 어업 허가를 받거나 어업 신고를 한 해당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

마.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일 것

2. 제1호나목2)의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 산정기준
 "어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이란 어가가 어업 경영 결과로 얻은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세부 산정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제1호나목2)의 어촌 거주기간 산정기준
 가. 제1호나목2)의 어촌 거주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촌 지역에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치료·요양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어촌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어촌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지급 제외 대상

-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등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 이외에 어가의 다른 구성원이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은 어가 단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어가)로 신청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인은 내국인으로 제한됨**(어가 내 외국인 구성원은 어가를 대표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정일(9월 30일)까지 신청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정일(9월 30일)까지 신청인이 어촌지역 거주 및 신청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년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접지불금을 신청한(지급받은) 어업인(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 「수산직불제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 「수산직불제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년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어업인(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1	소규모 어가 직불제	(어가 당) <u>연 130만원</u>	2025. 1월~12월 (신청기한: 7월 31일까지)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5. 5. 19.(월) ~ 2025. 7. 31.(목)

나. 신청방법

- 관련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접수
- 세대 단위를 대표하여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 대표로 신청

다. 접수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

라. 구비서류

① 공통사항

- 어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 등)
- 신청인의 어업·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및 신청인 어가 구성원 모두의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어업허가, 양식업의 면허·허가, 어업신고,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및 신청인 어가 구성원 모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1년간의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판매한 위판정보
- 신청인 및 신청인 어가 구성원 모두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1년간의 위판실적을 제외한 수산물 판매실적자료
*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어촌계 사매매 장부, 구매확인서[지침 별지 제8호 서식]등 인정, 구매확인서는 어업경영체 증빙에 따른 판매사실 확인서 등 증빙 가능 타서식 인정 가능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식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지분형태로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어가 구성원의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는 미첨부)
- 신청연도 직전연도의 신청인 어가 구성원 개인별 종합소득세 납부 정보
-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필요시)
- 신청인의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제1호·제2호·제6호에 따른 신청인인 경우(연안어업)

- 신청인 어가 내 어선의 입항·출항 정보
- 신청일 현재 신청인 어가 구성원이 소유한 전체 어선 톤수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신고어업 분야 신청인인 경우

- 신청인의 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산업 분야 신청인인 경우

- 신청인 가구 구성원 전체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1년간의 양식수산물 판매실적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문 의 처 : 도 수산정책과, 시 해양수산과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 도 수산정책과(710-3215)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760-2743)		
성산읍(760-4284)	대정읍(760-4085)	남원읍(760-4183)
표선면(760-4474)	안덕면(760-4372)	송산동(760-4513)
정방동(760-4536)	천지동(760-4601)	중앙동(760-4583)
효돈동(760-4642)	영천동(760-4662)	동홍동(760-4695)
서홍동(760-4726)	대천동(760-4805)	중문동(760-4823)
예래동(760-4865)		

4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 방법

- (지급대상자 선정) 시장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읍·면·동장과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통지하며,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소규모어가에 직불금을 지급
- (지급 방법)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자의 소규모어가 직불금 준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신청자(본인) 계좌로 입금
- (지급 시기) 준수 의무 이행 여부 확인 및 기타 행정절차가 완료 시점부터 지급(12월 초 예정)

5. 지급 제한 및 대상자 관리, 제재

- 지급 제한: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해당하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 가.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 나.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 다.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9.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 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 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제20조(제한기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표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 (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지급제한을 받은 자가 지급신청연도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지급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지급제한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은 지급신청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가중할 수 있고, 제2호에 따른 지급제한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지급제한 기간을 2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지급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나.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3년
다. 법 제8조, 제14조,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4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4항		
1)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2)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공동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1차 경고	
		2차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1년
		3차 어촌마을공동기금 미지급	3년
마.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해당 양식면적의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미지급	1년
사.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아. 법 제19조제2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자. 법 제19조제3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5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별로 1차 위반 시 10퍼센트, 2차 위반 시 20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40퍼센트씩 미지급	
차.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6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 제7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지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한 경우 1)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3)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법 제21조 제1항제8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파.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법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또는 법 제18조의4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의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해당 세대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육림업 직접지불금	법 제21조 제1항제9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	

※ 「수산직불제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직접지불금 지급 전까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업법」 등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내수면어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소금산업진흥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식물신품종 보호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어선안전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어장관리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원양산업발전법」,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14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1의3]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4조 관련)

1. 공통 준수사항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일일 어획량 또는 양식업의 생산량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할 것

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실적 자료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할 것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 조치를 준수할 것

라.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폐어구 또는 어업용 폐시설물 등의 폐기물을 투기나 폐기하지 말 것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

⑤ 신청인 및 어가 구성원의 양식업 면허·허가 등의 내용														⑥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 내용								
⑤-1 양식업 면허·허가 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						⑤-2 어업 허가 []						⑤-3 어업 신고 []				⑥-1 소규모어가 어업형태·어업 경영규모				⑥-2 신청 유형 (○·×)		
성명	면허·허가 번호	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 종류	양식장·생산시설의 면적 (㎡)	유효기간	전년도 판매액 (천원)	성명	허가 번호	어업종류	어선톤수	어선번호	유효기간	선적항	성명	어업종류	조업구역	유효기간	구분	해당 여부 (√ 표시)	성명			
																		1)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해당 []미해당			
																		2)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다만, 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의 경우에는 총톤수 5톤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한정합니다.	[]해당 []미해당			
																		3)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른 어업 신고를 한 어업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겸업하는 어업인은 제외합니다. 가)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 면허 나) 「수산업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 허가 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허가	[]해당 []미해당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어업인	[]해당 []미해당			

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읽고 [] 확인란에 √ 표시합니다.

- 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 확인
-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제6항에 따라, 조사, 장부나 서류의 열람 등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관련 서류를 보관·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며,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며, 제제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확인
- 4.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했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	----	----------

<p>신청인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일 현재 유효한 양식업 면허·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 허가 및 어업 신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어가 내 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실적 자료 3. 신청인의 어업 종사기간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어촌 거주기간이 어업 허가를 받거나 어업 신고를 한 해당 어촌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3), 6) 및 7)에 따른 어업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5.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 7. 수산물 위판정보 8. 어선등록필증 9. 어선 입항·출항정보 10.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1.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12. 어업면허증 13. 어업 허가·면허·신고 정보 1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5. 입금계좌확인정보 16. 주민등록표 등·초본 1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p>수수료 없음</p>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경영주인 어업인, 경영주 외의 어업인 및 그 외 가족구성원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은 담당 공무원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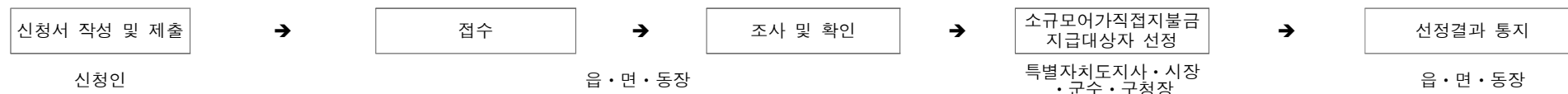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어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어업인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이 신청서에 적힌 경영주인 어업인, 경영주 외의 어업인 및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수산업협동조합등”이라 합니다)의 수산정책지원, 수산정책안내 서비스, 지방 수산정책 지원, 수산업·어촌 사회 안전망 지원, 수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용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수산업협동조합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수산보조금 정보, 그 밖에 수산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에 수산업·어촌 관련 용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적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선정·점검·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수산업협동조합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어업의 허가·신고, 양식업의 면허·허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어선·어구·시설 거래내역 등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경영주</td> <td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경영주 외의 어업인</td> <td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경영주 외의 어업인</td> <td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그 외 가족 구성원</td> <td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그 외 가족 구성원</td> <td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그 외 가족 구성원</td> <td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td> </tr> </table>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어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어업인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어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어업인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1. 일반현황: 신청인과 관련한 사항을 적습니다.

가. ①란은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어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어업인을 말합니다.

나. ②·③란의 경영주인 어업인 및 경영주 외의 어업인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다. ④-1란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신청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적습니다.

라. ④-2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는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다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으로서 세대 분리 기간(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3년 이내인 어가 구성원의 인적정보를 모두 적습니다.

2.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신청: ⑤란은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 및 어가 구성원의 양식업 면허·허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어업 허가 및 어업 신고 내용을 모두 확인하여 적고, ⑥란은 신청인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신청 내용을 적습니다.

가. ⑤-1란은 신청인 및 어가 구성원이 보유하는 양식업 면허·허가 및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성명란은 신청인 및 어가 구성원 중 양식업 면허·허가 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보유한 사람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전년도 판매액란은 신청인의 신청연도의 직전연도 기준 양식수산물 또는 수산종자의 연간 판매액을 천원 단위로 적습니다.

나. ⑤-2란은 신청인 및 어가 구성원이 보유하는 어업 허가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성명란은 신청인 및 어가 구성원 중 어업 허가 보유한 사람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선적항은 허가어선의 선적항을 적습니다.

다. ⑤-3란은 신청인 및 어가 구성원의 어업 신고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성명란은 신청인 및 어가 구성원 중 어업 신고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라. ⑥란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⑥-1란은 ‘소규모어가 어업형태·어업 경영규모’ 중 신청인 및 어가 구성원이 해당되는 곳에 모두 √ 표시하고,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⑥-2란은 ‘소규모어가 어업형태·어업 경영규모’ 중 신청인이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유형을 선택하여 한 곳만 ○ 또는 ×로 표시합니다.